

의안번호	제 105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회)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4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5
----------	-----

제출연월일 : 2007년 4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감면규정을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단체 포함)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기업도시의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조례 운영 목적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 내용 보완

(안 제1조)

- 감면 근거 법조항 추가 및 감면 목적의 명확화

나.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9조)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단체 포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만 감면대상

다.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신설, 제30조의2)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15년간 취득세, 등록세 면제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15년간 취득세, 등록세 면제

라. 감면결정 통지서 서식 마련 (안 제32조)

-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함에 있어 별도의 통지 서식이 없던 것을 새로이 마련하여 사용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충청북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를 “충청북도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제1항 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충청북도세감면신청서”를 “충청북도 도세 감면 신청서”로 하며,

제32조제2항 중 “그 내용을” 을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충청북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 -----.</p>
<p>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p>	<p>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이 ----- ----- ----- ----- .</p>
<p>〈신설〉</p>	<p>제33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p>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p>제32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p>	<p>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p> <p>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p> <p>3.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p> <p>4.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2조(감면신청 등) ①----- -----</p>
---	---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충청북도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
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
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충청북도 도세 감면 신청서 -----

----- .

②-----

-----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 .

(별지 제2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및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반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12조(세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12.31>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플

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용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5. 고급선박 : 비영업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6. 삭제 <2000.12.29>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기업도시"라 함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에 한하며,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 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 라.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한한다)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기업도시

-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제3호의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39

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5항의 규정은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 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부가통신업
4. 연구 및 개발업
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제104조의6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9. 제116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②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